

'99 하반기 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안)

-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5건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99 하반기 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 목록

의안번호

- 195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96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97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98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99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00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2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03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4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05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06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7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8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9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210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95
----------	-----

□ 제안이유

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으로 조례의 목적 개정

□ 침 부

1.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p> <p>.....</p> <p>.....</p>		

관 련 법 규 발 취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

발의년월일 : '99. 11

발 의 자 : 조례정비

의안 번호	196
----------	-----

□ 제안이유

- 유사한 내용의 중복된 규정을 통합하여 주민이 알기
정비하고
- 채권자가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시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를 제출
도지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을 경감케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채무보증 발급신청시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확
제출 의무화
- 보증채무현황 보고기간 명시
- 애매모호한 자구 정비 등

□ 첨 부

1.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주채무의 채무자”를 “주채무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중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를 “보증채무현황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년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①.....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해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을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p>	<p>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권 설정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 ~④(생략)</p> <p>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p>	<p>② ~③(현행과 같음)</p> <p>제6조(보고)..... 보증채무현황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년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p> <p>②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관 련 법 규 발 취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97
----------	-----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출장소의 직급·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장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출장소장의 직급규정 삭제
-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 삭제

□ 첨 부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장)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소장)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5조(생략)</p>	<p><삭제></p>
<p>제6조(생략)</p>	<p>제5조(현행과 같음)</p>
<p>제7조(생략)</p>	<p>제6조(현행과 같음)</p>
<p>제8조(생략)</p>	<p>제7조(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발 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①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안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8. 31]

④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97. 2. 4] [개정 98. 8. 3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98
----------	-----

□ 제안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담당관, 계장등의 명칭을 직제에 맞는 명칭으로 수정
-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등을 수정
 - 농지개혁법을 → 농지법으로
 -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을 → 가정의례에관한법률로

□ 첨 부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동조 제3항중 “담당관 및 실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9호의 “농지개혁법 제4조”를 “농지법 제48조”로 하고 동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6조제2항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담당관</u>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출장소의 <u>담당관</u> 및 <u>실과장</u>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출장소장이 위촉한다.</p>	<p>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총무과장</u>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출장소의 <u>실과장</u>으로 하고, 위촉위원은</p>
<p>제3조(결정사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8.(생략) 9. <u>농지개혁법 제4조</u>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생략) 11. <u>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u>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p>	<p>제3조(결정사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8.(현행과 같음) 9. <u>농지법 제48조</u>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현행과 같음) 11. <u>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u>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p>

관 련 법 규 발 취

<농지법>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삭제 [99. 3. 31]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12조(가정의례심의위원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을 추진하게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97. 12. 13 법5454]

②가정의례준칙의 보급·실천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각급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직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99
----------	-----

□ 제안이유

직제개편에 관계없이 조례상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내무국장 → 도세 담당국장
- 업무 주관과장 → 도세 담당과장
- 업무 주관계장 → 도세 담당사무관으로 수정

□ 첨 부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내무국장”을 “도세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업무 주관과장”을 “도세 담당과장”으로, “업무 주관계장”을 “도세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과세적부심사위원회) ①(생략)</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 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5.(생략)</p> <p>③~④(생략)</p> <p>⑤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으로 서기는 업무 주관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8조(과세적부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p> <p>.....도세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p> <p>.....</p> <p>.....</p> <p>1. ~5.(현행과 같음)</p> <p>③~④(현행과 같음)</p> <p>⑤.....</p> <p>.....</p> <p>.... 간사는 도세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도세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p> <p>.....</p>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0
----------	-----

□ 제안이유

보건환경검사 및 분석장비의 발달에 따른 일부 시험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도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5종의 검사 처리기간 단축
 - 식품류 검사 : 20일 → 18일
 - 목욕수 검사 : 14일 → 8일
 -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검사 : 30일 → 18일
 - 폐기물 검사 : 14일 → 10일
 - 먹는 물(샘물) 검사 : 14일 → 12일

□ 첨 부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7호 서식”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①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합(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중 식품류 검사의 4종의 검사 처리기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 시험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처리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사용) 이 조례 개정전의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 서식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새로 정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중 개정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시험종별	처리기간	
	종전(을)	개정(으로)
· 식품류 검사	20일	18일
· 농·축·수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	30일	18일
· 먹는물(샘물)검사	14일(여시니아균검사 28일)	12일(여시니아균검사 28일)
· 목욕수 검사	14일	8일
· 폐기물 검사	14일	10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검사.시험의뢰) ①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합(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p> <p>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검사.시험의뢰) ①.....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규칙이 정하는 서식에.....</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호(시험성적서 교부) ①연구원 에서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p> <p>[별표 1] 시험용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p>			<p>제4조(시험 성적서 교부) ①.....실시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별표 1] 시험용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p>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 소요량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 소요량
· 의약품 등 검사	15일	(생략)	· 의약품 등 검사	15일	(현행과 같음)
· 식품류 검사	20일	(")	· 식품류 검사	18일	(")
· 식품첨가물 검사	20일	(")	· 식품첨가물 검사	20일	(")
· 식품의 기구·용기 및 포장류 검사	20일	(")	· 식품의 기구·용기 및 포장류 검사	20일	(")
· 농·수·축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	30일	(")	· 농·수·축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	18일	(")
· 먹는물(샘물) 검사	14일	(")	· 먹는물(샘물) 검사	12일	(")
※여시니아균검사	28일	(")	※여시니아균검사	28일	(")
· 목욕수 검사	14일	(")	· 목욕수 검사	8일	(")
· 수처리제	14일	(")	· 수처리제	14일	(")
· 대기·소음·진동 검사 및 공중이용 시설검사	25일	(")	· 대기·소음·진동 검사 및 공중이용 시설검사	25일	(")
· 하천수·호소수 · 오히수·분뇨· 폐수검사	14일	(")	· 하천수·호소수 · 오히수·분뇨· 폐수검사	14일	(")
· 폐기물 검사	14일	(")	· 폐기물 검사	10일	(")
· 유해화학물질검사	15일	(")	· 유해화학물질검사	15일	(")
· 임상학적 세균검사	10일	(")	· 임상학적 세균검사	10일	(")
· 토양오염도 검사	20일	(")	· 토양오염도 검사	20일	(")

관 련 법 규 발 취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수수료등)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 12. 13 법5454]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1
----------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상의 기금관련 규정과 기금의 운용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 재해발생시 기금유자금의 상환연기제도와 운영자금지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촌개발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케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금 수혜대상자로서 어업인 및 임업인후계자를 포함시킴.
- 개발기금운영실무위원회제도와 사업대상자 추천제 폐지
- 보조 또는 융자지원방식을 융자지원으로 통일하고 운영자금 지원제 신설(300만원이상 1,000만원이내)
- 자금의 용도별로 상환기간 및 융자이율 차등구분
 - 시설자금 : 년 3%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운영자금 : 년 5%에 1년만기 일시상환
- 상환연기 제도 신설(천재지변등 재해발생시)
- 회계연도 개시전 기금관련 서류 의회제출 규정 신설 : 기금운용계획은 50일전, 결산보고서는 120일전

□ 첨 부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를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어업, 임업포함)인 후계자”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용계획) ①개발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개발기금 사용계획
3.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배정하면”을 “배정한 때에는”으로 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 및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규칙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농어민은 3,000만원 이내로 하며, 작목반 등 농어민 조직은 1억원 이내로 한다.
2. 운영자금은 농어민, 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1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이자는 시설자금은 년3%로 하고, 운영자금은 년5%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중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농업정책과장, 수입금출납원은 농정기획계장으로 한다.”를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기금주무과장, 수입금출납원은 기금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개발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중 “기금의 용자(보조)를 받은”을 “기금의 용자를 받은”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결산보고서작성)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 <u>조례</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 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소득개발을 위한 능력이 있는자로 4H회원, <u>농어민</u> <u>후계자</u>,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와 기타 영농에 성실히 앞장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생략)</p> <p>제3조(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생략) ②~③(생략) ④개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기금 운영 실무 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의 대상자 선정 3. 기타 경미한 사항</p>		<p>(제명)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u>농업</u> (어업, 임업포함)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②(현행과 같음)</p> <p>제3조(심의위원회 등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삭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4조(운영계획) ①개발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년도 개발기금 사용계획 3.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p>제4조(운용계획) ①개발기금운용계획은</p> <p>.....도지사가 수립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개발기금 사용계획 3.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p> <p>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개발기금을 배정하면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 및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개발기금을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사업비 지원)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지원은 <u>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②용자금(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u>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내로 하며, 작목반등 농어민조직의 지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u></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u>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u></p> <p>②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u>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자금은 <u>농어민은 3,000만원 이내로 하며 작목반등 농어민조직은 1억원 이내로 한다.</u> 2. 운영자금은 <u>농어민, 작목반등 농어민조직은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로 한다.</u>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용자금은 <u>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u></p> <p>②원금의 이자는 <u>년 3%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로 가산한다.</u></p>	<p>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시설자금은 <u>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1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u></p> <p>②용자금의 이자는 <u>시설자금은 년3%로 하고, 운영자금은 년5%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세입·세출) ①~②항(생략)	③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농업정책과장 수입금 출납원은 농정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1조(세입·세출) ①~②항(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기금주무과장, 수입금출납원은 기금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농정개발국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개발기금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개발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융자(보조)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관 련 법 규 발 취

(지방자치법)

- 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 제13조의4. 제35조. 제140조의2. 제140조의3. 제146조. 제154조의2.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제38조. 제41조. 제12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0조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③(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91. 12. 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 8. 31 법6002] [[시행일 2000. 1. 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및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94. 12. 2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9. 23, 95. 5. 16]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98. 7. 16]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2
----------	-----

□ 제안이유

사회현실을 감안 1지역1명품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향토전통음식을 제외하고, 기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농특산물,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을 종전에는 명품으로 하였으나 향토전통음식은 제외
- 명품에 대한 육성기금 융자한도액을 개소(사업장)당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
- 2000년 1월 1일부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현재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지방재정법 제110조 적용)

□ 첨 부

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민·공예품, 향토전통 음식의 품목”을 “민·공예품 등의 품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조중 “개소(사업장)당 1억원 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사업은 2천만원 이내로”를 “개소(사업장)당 2억원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농정기획계장”을 “소득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중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결산보고서작성)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역1명품』 이라함은 <u>내무부에서 『지역1명품』으로 선정한 각 시군의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의 품목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p> <p>1. 행정자치부에서</p> <p>..... 및 민·공예품 등의 품목을 말한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p> <p>1. <u>내무부의 교부세</u></p> <p>2. ~4호(생략)</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p> <p>.....</p> <p>1. 행정자치부의 교부세</p> <p>2. ~4호(현행과 같음)</p>
<p>제12조(용자조건) 용자한도액은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육성사업은 <u>개소(사업장)당 1억원 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u></p>	<p>제12조(용자조건) 용자한도액은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육성사업은 <u>개소(사업장)당 2억원 이내로 한다.</u></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농정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u>농업정책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농정기획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u></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p> <p>.....</p> <p>.....농정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u>소득개발 담당 사무관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u></p>
<p>제18조(결산 및 보고 등) 도지사는 <u>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u></p>	<p>제18조(결산 및 보고 등)</p> <p>3월 이내에 <u>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0. 1. 1.]</p>

관 련 법 규 발 췌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91. 12. 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99. 8. 31 법6002] [시행일 2000. 1. 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94. 12. 22]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3
----------	-----

□ 제안이유

- 조례상의 서식규정을 규칙에 위임하고,
- 권한위임 규정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와 통합정비함으로서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사무와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삭제(규칙에 위임)
- 권한의 위임(10건의 사무)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통합

□ 첨 부

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이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별지 제4호 서식으로”를 삭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전의 제17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은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따로 정할 때까지 적용한다.
- ③(서식규정) 이 조례 개정전의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식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반시설관리) ①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p>
<p>제4조(개량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개량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개량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개량계의 조직) ①.....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p>
<p>제5조(개량계 등록)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개량계 등록)..... 개량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지도감독) ①(생략) ②도지사는 개량계장에게 <u>별지 제4호 서식</u>으로 개량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지도감독) ①(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개량계장에게 <u>개량계 운영</u>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관리 2.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량계의 조직 3.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량계의 등록 4.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제출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한 승인 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재조정 및 재결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9. 제15조 규정에 의한 해산승인 및 기반시설의 폐지 관리자의 지정 10.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p>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관 련 법 규 발 취

<농지개량조합법>

- 제88조(농지개량계) ①시·도지사는 조합구역외에 있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 8. 8]
- ③농지개량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 ④제5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농지개량계”로 본다.

충청북도문화예술킨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4
----------	-----

□ 제안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수정
-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 헌법 제49조에 위배)

□ 첨 부

1. 충청북도문화예술킨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문화예술에 이해”를 “문화예술에 조예”로 한다.

제3조제3호중 “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4조중 조문명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회무를 통할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위원회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비변상)위원회의 업무로 출석하거나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문화진흥국장, <u>도 교육청</u> <u>중등교육국장</u>과 지방문화재 위원 및 <u>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u> 중에서 <u>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제2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문화진흥국장, <u>도 교육국장과</u> <u>지방문화재 위원</u> 및 <u>문화예술에 조예가</u> <u>깊은 자</u> 중에서 <u>도지사가 위촉하는</u> <u>자가 된다.</u></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u>사항을 심의한다.</u> 1. ~2.(생략) 3. <u>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u> <u>기반 조성</u>에 관한 사항</p>	<p>제3조(기능)..... 1. ~2.(현행과 같음) 3. <u>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u> <u>중요사항</u></p>
<p>제4조(위원회의 임기).....</p>	<p>제4조(위원회의 임기).....</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u>위원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u></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u>위원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u></p>
<p>제6조(회의개최등) ①(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u>정기회의와 임시회의</u> <u>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u> <u>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u>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u>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u> <u>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u> <u>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제6조(회의개최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u> ③..... <u>과반수의</u> <u>찬성으로 의결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u>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 4. (생략) 	<p>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u>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u> 4. (현행과 같음)
<p>제11조(실비보상)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업무로 출석 하거나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관 련 법 규 발 취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③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5
----------	-----

□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내부 조문간의 상충되는 체계, 부적절한 명칭 및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부적절한 자구수정(통괄 → 통할, 연구원·보조원 → 연구관·연구원)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위원장(행정부지사) → 도지사로 수정

□ 첨 부

1.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회무를 통괄하여”를 “회무를 통할하며”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연구원, 보조원”을 “연구관, 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제13조(실비변상) ①(생략) ②상임위원, 연구원,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실비변상) ①(현행과 같음) ②상임위원, 연구관, 연구원에게는</p>
<p>제14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4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6
----------	-----

□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의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간사 1인과 서기 → 간사와 서기 각 1인
-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을 → 체육담당국장, 체육담당과장
- 협의회 의결을 거쳐 → 협의회 심의를 거쳐로 자구수정

□ 첨 부

1.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간사 1인과 서기”를 “간사와 서기 각 1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문화관광국장”을 “체육담당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체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7조(간사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인과 서기</u>를 둔다.</p> <p>②간사는 <u>문화관광국장</u>이 되며, 서기는 <u>문화체육과장</u>이 된다.</p>	<p>제7조(간사등) ①..... <u>간사와 서기</u> 각 1인을 둔다.</p> <p>②간사는 <u>체육담당국장</u>이 되며, 서기는 <u>체육담당과장</u>이 된다.</p>
<p>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협의회</u>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제9조(시행세칙) <u>협의회</u>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p>

관 련 법 규 발 취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및 ②삭제 [98. 12. 31]

③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7
----------	-----

□ 제안이유

- 하천법령과 공유수면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 현 조례상의 애매모호한 용어, 중복된 자구와 조항을 통합 정리함으로써 조례시행의 혼선과 착오를 예방하고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상의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 정리
- 공유수면관리사항 삭제 및 조례제명 변경
- 소액점용료의 부정수기준 상향조정(600→5,000원)
- 애매모호한 점용기간 산정방식 수정
-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규정
- 알기 쉬운 용어 및 자구로 정비(사력 → 모래, 자갈 등)

□ 첨 부

1.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6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 1일을 365일분의 1년으로 한다.

⑤하천법 제38조제3항에 의한 변상금은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하천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며, 동조 제2항에서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2.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3.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민자력에 의하여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00%
5.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재해율이 30~50% 미만의 경우에는 30%, 재해율이 50~80% 미만인 경우에는 50%, 재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각각 감면한다.

제3조의 2를 제4조로 하고, 동조(중전의 제3조의 2)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4조와 제5조를 통합 다음과 같이 제5조로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 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
- ②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점용료 등을 납기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

1.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③제1항의 위임받은 업무를 다른 시장,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징수금을 교부한다.

1.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 위탁 : 징수금액의 100분의 15
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 위탁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별표 1] 중 각란의 “사력”을 모두 “모래, 자갈”로 한다.

[별표 1] 의 4.의 라.(선박의 운항)의 (1)중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을 “5톤이하 도선”으로 하고, “여객선”은 “도선”으로 하며, 같은란(4) 다음에 (5)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사업등록 선박은 유선의 점용료 기준을 따른다.

[별표 1] 의 6.중 나.(기타의 용수의 배수)와 구분란 10.과 그 해당란을 각각 삭제하고,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을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으로 한다.

[별표 2] 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의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사업등록선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명]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3조 동조 시행규칙 제26조의 2와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의 하천 및 공유수면(이하 “하천등”이라 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생략)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p>	<p>[제명] 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5,000원 미만인 ②(현행과 같음)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 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④(생략)</p> <p>⑤하천법 제33조제3항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 제34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하천법 제38조 제3항의 의한 변상금은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하천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며, 동조 제2항에서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2.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3.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민자력에 의하여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00% 5.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재해율이 30% ~50% 미만의 경우에는 30%, 재해율이 50~80% 미만인 경우에는 50%, 재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각각 감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기타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p>	<p>— (삭 제) —</p>
<p>②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④점용료 등을 납기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p> <p>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하천법 제68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p> <p>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만,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징수의 위임) ①(생략)</p> <p>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징수의 위임)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p>③제1항의 위임 받은 업무를 다른 시장,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징수금을 교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위탁 : 징수금액의 100분의 15 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 위탁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토지(하천 부지)점용	가.~나.(생략) 다. (생략) [단서]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u>산력</u>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2. 토지(하천 부지)점용	가.~나.(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단서]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u>모래</u> , <u>자갈</u>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수의 점용	가.~다.(생략) 라. 선박의 운항 (1)도선 및 5톤이하 정기 여객선(차량 도선은 배액) · 갑지~병지(생략) ※ 5톤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반액을 가산 (2)~(4)(생략) (5)(신설)	4. 유수의 점용	가.~다.(현행과 같음) 라. 선박의 운항 (1)5톤이하 도선(차량 도선은 배액) · 갑지~병지(현행과 같음) ※ 5톤초과 도선은 (2)~(4)(현행과 같음) (5)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사업등록 선박은 유선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른다.
5. 지하의 유수 채취	(생략)	5. 지하의 유수 채취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6. 배수(주수)	가. (생략) 나. 기타의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 제1항제10호에 해당할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배수(주수)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7.토석,사력의 채취	가. 당해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 가격 평균치의 15/100	7.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가.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8.~9.(생략)	(생 략)	8.~9.(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 수면에 한함)	(생 략)	(삭 제)	(삭 제)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생 략)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p>	<p>(삭 제)</p>	<p>[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3조의 2관련)</p>	<p>[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3조의 2관련)</p>	

관 련 법 규 발 취

[하천법]

제38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 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99.8. 9]]

제39조(점용료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99.8. 9]]

[하천법시행령]

제30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 ②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공유수면관리법〉

- 제9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한다.
- ②점·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③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제13조(점·사용료 등의 산정)**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점·사용료의 납입기한 기타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점·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점·사용료의 조정산식) 영 제14조제2항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조정산식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수상레저안전법〉 : ('99. 2. 8 법률 제5910호)

제2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8
----------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현행 조례상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이율을 년리 6.5퍼센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리”로 변경

□ 첨 부

1.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용자 및 보조조건)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
제5조(용자 및 보조조건) ①~②(생략)	제5조(용자 및 보조조건) ①~②(현행과 같음)			③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③.....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율 : <u>년리 6.5퍼센트</u>	1. 이율 : <u>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리</u>
		2. (생략)		④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발 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재원의 조달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이하 “주거환경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등에 관한 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97. 12. 13 법5454, 99. 1. 18, 99. 5. 24]

③주거환경개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주택개량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
6.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동법 시행령>

제8조(재원의 조성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주거환경개선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자금

4.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규모·지원조건 및 금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등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 2. 5]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2.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09
----------	-----

□ 제안이유

- '95. 7. 13일 증평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되고, 이에 따라 본조례를 '96. 6. 28일 제정 공포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 증평지방공업단지 지정해제('99. 1. 6) 및 증평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가 폐지('99. 7. 30)됨에 따라
- 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

□ 첨 부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11. 4.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210
----------	-----

□ 제안이유

하천법이 '99. 2. 8일 법률 제5893호로 전면 개정 공포되어 '99. 8. 9일 부터 시행케 되면서 종전의 하천법 제58조(수익자부담금)의 규정이 삭제되므로서 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함.

□ 첨 부

1.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발 취

(구 하천법)

제58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하천법)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 8. 9]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매수·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4조 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하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료등
2.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공작물 기타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폐천부지의 처분금
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
5. 기타 하천의 관리에 따르는 수익